

보 상 계 획 공 고

2023년 7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행 「국도7호선 화진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토지의 보상계획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국도7호선 화진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붙임 참조
4. 사업개요 : 국도7호선 화진교차로 개선 L=500m
5. 사업기간 : 2022년 6월 15일 ~ 2024년 6월 3일
6. 사업구간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지경리 일원
7. 열람방법 : 대상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포항시(건설과),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홈페이지 주소: <http://p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포항)→공지사항
8. 보상시기 : 2023년 9월~10월 중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비 고
			성명	주소			

※제출양식상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단, 소유자 사망이거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23. 7. 18.~ 2023. 8. 1.(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260-2572)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붙임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